

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XIII 특별약관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)

- 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갱신이 도래하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 (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13조(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)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)을 말하며, 갱신도래상품 및 대상담보는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릅니다. 단, 보험업감독규정 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 설계 등)에서 정한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함
- ②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「실손의료 보험담보」의 갱신기간 동안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XIII(이하, 「안정화 할인XIII」라 함)를 적용하며,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안정화 할인XIII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2조(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 보험담보의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적용되며, 할인율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릅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